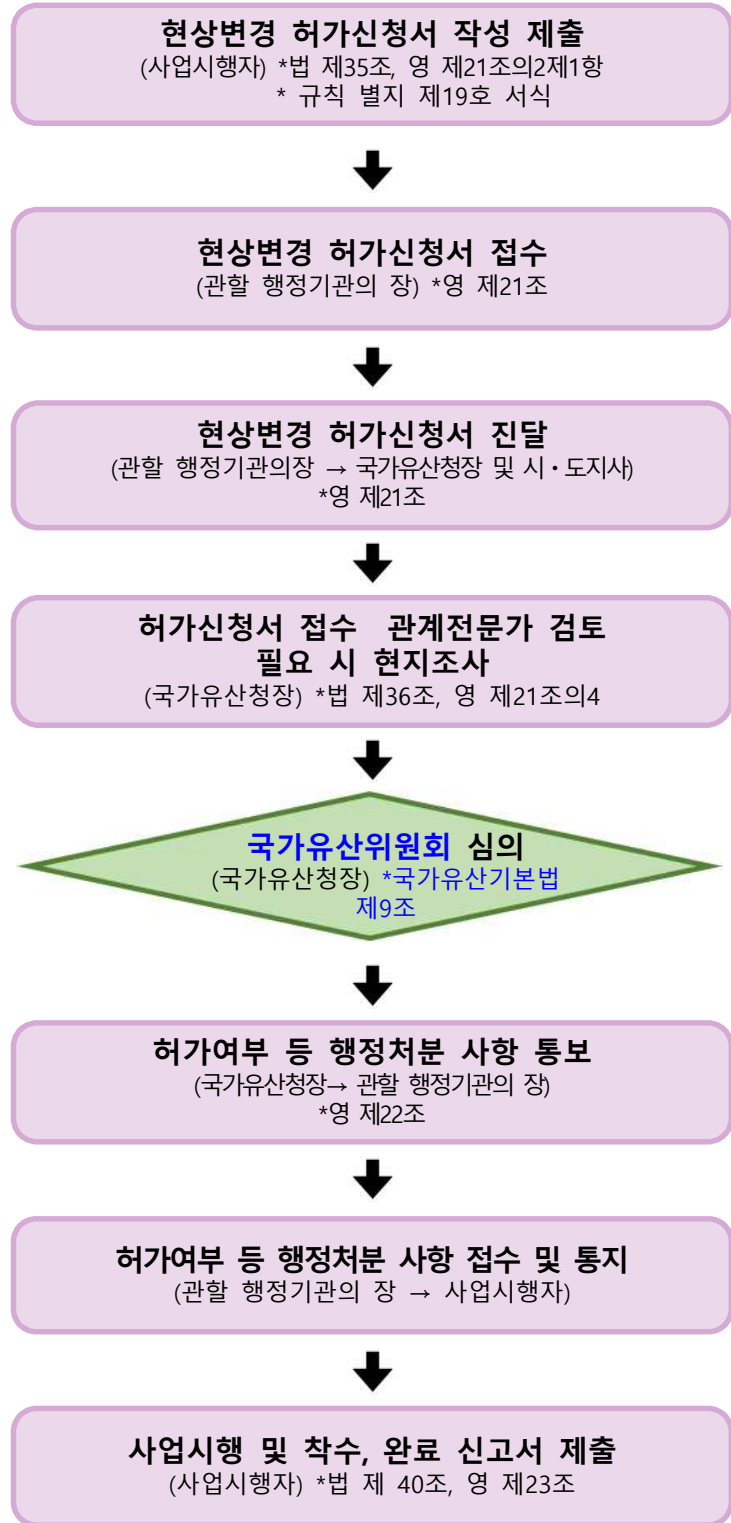


[별표1]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

1. 국가지정문화유산(보호)구역



2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
- 경미한 행위허가는 행정기관 장애 위임(*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)
- 허용기준 범위 내인 경우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생략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 신청 접수
/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실시(건축행위 등
허용기준 검토)
(관할 행정기관의 장) *법 제13조, 영 제7조의2)



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제출
(사업시행자) *법 제35조, 영 제21조의2제2항
*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



행위허가신청서 접수 및 진달
(관할 행정기관의 장) *영 제21조



행위허가신청서 접수/필요 시 현지조사
(국가유산청장) *법 제36조, 영 제21조의4



국가유산위원회 심의
(국가유산청장) *국가유산기본법
제9조



허가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
(국가유산청장 → 관할 행정기관의 장)
*영 제22조



허가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접수 및 통지
(관할 행정기관의 장 → 사업시행자)



사업시행 및 착수, 완료 신고서 제출
(사업시행자) *법 제 40조, 영 제23조